

가나자와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2018년 4월 1일 시행)



<조례 개정의 포인트>

자전거는 「차량」이라는 것을 명기

자전거는 차량으로 분류됩니다.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실시하고, 차도의 원편을 달립니다. 또한 헬멧 착용, 자전거 손해배상보험 가입, 점검·정비 등을 실시합니다.




자전거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 ①자전거 이용자 
- ②보호자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 ③사업자 (종업원에게 업무상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할 경우)
- ④자전거 대여업자등 

헬멧 착용 노력 의무화

- ①보호자 (중학생 이하의 자녀가 헬멧을 착용하도록)
- ②고령자 (70살 이상의 고령자 대상)

 넘어졌을 때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헬멧을 착용합니다.

그 외

- 자전거 통행 공간의 정비 추진
- 방법대책 (방법등록, 잠금장치)
- 자전거 손해배상보험 가입여부 확인
- 정보제공, 헬멧에 관한 정보제공 (자전거 판매자)

<자전거 손해배상보험의 종류 (예) >

보험의 종류(예)		
화재보험의 특약(개인배상 책임보상 특약)	단체보험	PTA보험
자동차보험의 특약(개인배상 책임보상 특약)		교통 안전 협회
상해보험의 특약(개인배상 책임보상 특약)	신용카드 부대보험	
각종 공제	화재 공제(개인배상 책임보상 특약)	자전거용 보험
	자동차 공제(개인배상 책임보상 특약)	자전거 차체 부대보험(TS마크)
	상해 공제(개인배상 책임보상 특약)	

조례에서 말하는 보험이란, 「상대방의 생명 혹은 신체의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뒷면의 체크시트로 가입 상황을 확인해주세요.

먼저, 보험에 가입해있는지를 확인합시다!

고액배상사례 **9,521만엔** (2013년 고배 지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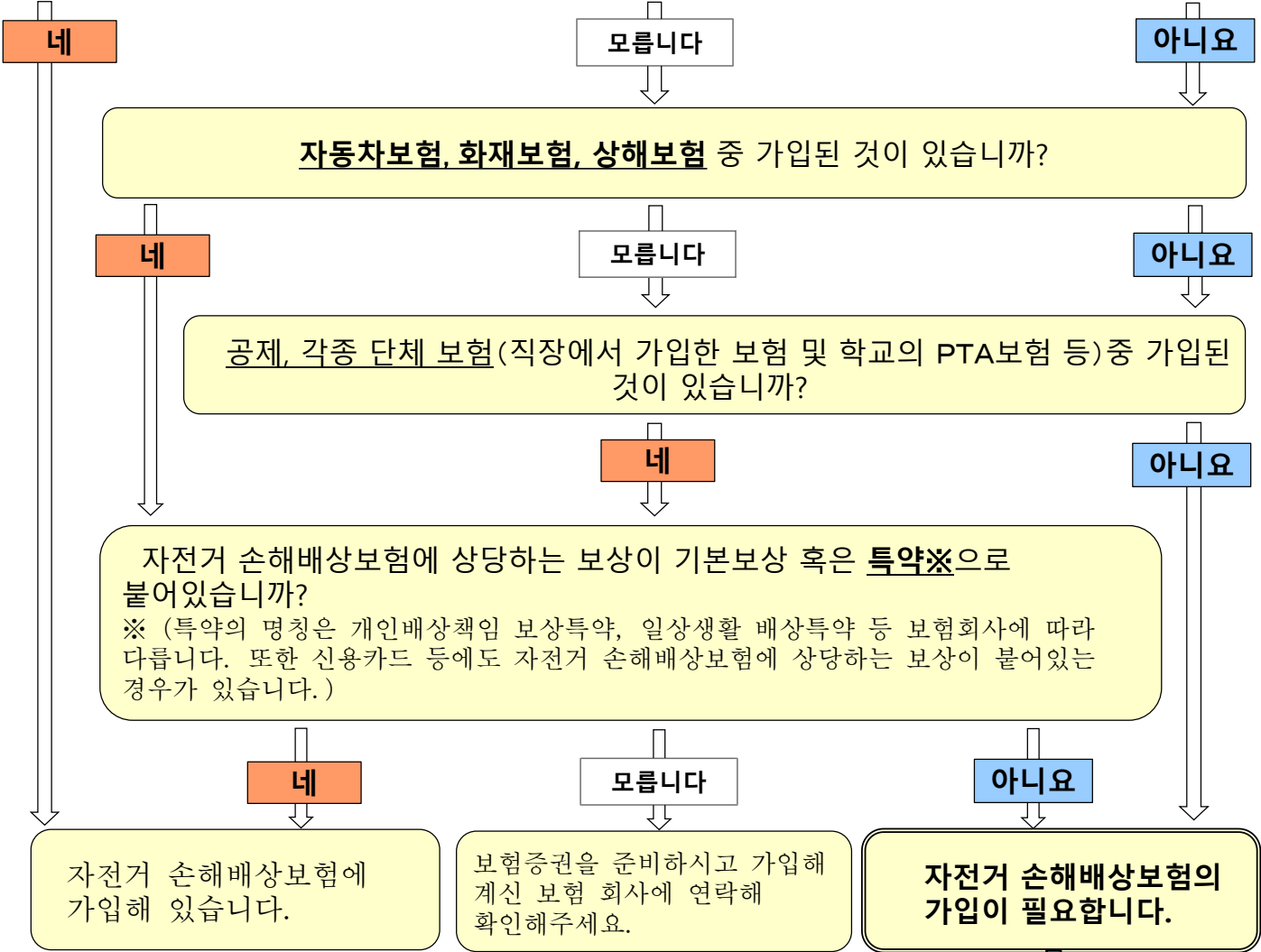
야간에 자전거로 귀가하던 초등학생이 보행중인 여성과 정면 충돌. 피해자가 의식불명에 빠져.



보험 가입 체크 시트

자전거 이용중의 사고로 타인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 등, 상대방의 생명 혹은 신체의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자전거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해있나요?

※ (점검·정비한 자전거에 부착되는 「TS마크」 등도 이 보험에 해당합니다.)



자전거 안전이용 촉진사업 제휴기업 · 단체

자전거보험 가입 등에 관한 상담은, 아래의 가나자와시와 사업 제휴 협정을 맺고 있는 각종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에 문의해주세요.

기업·단체명	연락처	기업·단체명	연락처
Kyoei Fire and Marine Insurance Company Limited	0120-719-112	가나자와 시민 공제 생활협동조합	076-231-7187
손해보험재팬닛폰코아 주식회사	0120-40-3196	University Co-operative Kansai-Hokuriku Business Association	076-262-6545
AIG General Insurance Co., Ltd.	076-222-0005	Ishikawa prefectual headquarters of Zenkyoren	Japan Agricultural Cooperatives Kanazawachuo 076-266-1127 Japan Agricultural Cooperatives Kanazawashi 076-237-3933